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05호 2013. 10. 7(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054호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2
○ 사천시 조례 제1055호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056호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12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540호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	15
○ 사천시 규칙 제541호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7
○ 사천시 규칙 제542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9
○ 사천시 규칙 제54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20
○ 사천시 규칙 제544호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32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272호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	38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13-1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46
○ 사천시 고시 제2013-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	48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편집 : 기획감사담당관실 ☎ 831-2215 · FAX 831-601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0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의 소비를 촉진 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식재료”란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생태친화적 생산·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 표시품, 이력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

추적관리농수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

-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인증품
 - 다.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품
 - 라. 「축산법」 제35조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합격품,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력관리가 가능한 축산물
 - 마.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권고·요청하거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농·축수산물
 - 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 아.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변형된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은 가공품
 - 자.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 등의 안전성이 확정되지 않은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친환경 급식”이란 건강과 환경·생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 가공, 유통과정이 환경 친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급식을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운영기구를 말한다.
 6. “학교급식프로그램”이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식생활교육과 농촌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학교급식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7. “지원금”이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 중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

1. 지원대상의 급식 질 향상 및 무상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지원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2.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이 식재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자 및 생산지역을 선정한다.
 3.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관내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 우선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지역농산물 수급체계를 구현한다.
 4.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통한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한다.
 5. 건강한 식생활 발전을 위한 학교급식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강구한다.
 6.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방안 지원과 그에 따른 관리 및 감독을 한다.
- ② 시장은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및 시행방안 수립
2.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배분방안 마련

제4조(급식지원)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급식에 필요한 경비 중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명시된 교육기관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6조(지원신청) 학교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관할 학교의 경우 사천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학교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 자 하는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5)

금액 및 산출기초

5. 급식시행계획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결정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시장이 대상 기관에 지원하되, 관할 학교의 경우 사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의 학교 및 시설은 직접 지원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이하 “학교 및 시설의 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현물인 경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한 공동조달에 의한 방법
 2.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법
- ⑤ 지원금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생산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⑥ 급식경비와 그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급식학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품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 교육 및 조사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⑤ 학교 및 시설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6)

제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및 시설(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기관과 공급자가 주문·공급·납품 등을 규정대로 처리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학기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천교육지원청,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학부모 대표 등과 합동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시장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한 때
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때
3.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때

제11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의원 1명
2. 사천교육지원청 급식업무관련과장 1명
3.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4. 영양(교)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7)

6.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7. 농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8.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9. 급식관련 전문가 1명
10. 품질기준 안전 관리 전문가 1명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천시 학교급식지원 계획 등의 심의
2. 학교급식 지원대상학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교급식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
3. 제12조제3항의 자격이 상실된 때
4.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8)

-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전체 업무를 통합관리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3. 재배농가생산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다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 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물품등록, 전산 수발주
5. 표준식단 “안” 및 식재료의 품질기준 “안” 마련
6. 학교급식 소요량 및 생산자 공급량 조사
7. 관할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8. 위원회, 관할 교육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업무 협의
9.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전한 식생활 교육, 생산자 조직 및 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급식운영협의회 및 실무위원회를 둔다.

④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필요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사회적 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⑥ 민간위탁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9)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0)

사천시 조례 제10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천시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관광지원시설” 이라 한다)” 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관광지원시설” 이라 함은] 을 “사천시 관광종합지원시설(이하 “관광지원시설” 이라 한다)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중 [“주차시설” 이라 함은] 을 [“주차시설”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휴게시설” 이라 함은] 을 [“휴게시설” 이란] 으로 하고, 같은 조제4호 중 [“레포츠센터” 라 함은] 을 [“레포츠센터” 란] 으로 하고, 같은 조제5호 중 [“기타 공공시설” 이라 함은] 을 [“그 밖에 공공시설” 이란] 으로 하며,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타사유” 를 “그 밖의 사유” 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를 “에”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1)

제6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고” 를 “에 따르고”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제4항 중 “의 규정에 의거” 를 “에 따라” 로 한다.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수탁자를 공개모집 하는 경우에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절차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제1항·제10조제1항제3호·제10조제2항 중 “의 규정에 의하여” 를 각각 “에 따라” 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다” 를 “에 따른다” 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사용기간중” 을 “사용기간 중” 으로 하고, “기타시설” 을 “그 밖의 시설” 로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2)

사천시 조례 제10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및 노면 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도의 포장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3)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
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
3. 보도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관리) 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 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에 따른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의 턱을 제로로 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4)

③ 동절기 보도공사를 가급적 자제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 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은 따로 집하장을 설치 보관하여 폐기물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으면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 재활용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5)

규 칙

사천시 규칙 제540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의 규정에”를 “에”로, “출자·출연(이하 “출자”라 한다)의”를 “출자·출연의”로,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를 “출자심의위원회의”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출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된다.”를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지역개발국장,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2년이상”을 “2년 이상”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출자와”를 “출자·출연(이하 “출자”라 한다)과”로,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잔여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6)

기간으로” 를 “남은 기간으로” 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7)

사천시 규칙 제541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이·통·반장 위촉 및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8)

[별표 2] <개정 07. 7.1, 09.9.1, 11.8.25, 13.9.30>

사천시 동의 통장 정수 (제4조관련)

행정동명	정 수	통 수
동 서 동	35	35
선 구 동	23	23
동서금동	20	20
별 용 동	40	40
향 촌 동	20	20
남 양 동	20	20

[별표 3] <개정 06.10.26, 07.4.2, 07.6.11, 07.7.1, 09.9.1, 11.8.25, 12.12.5, 13.5.10, 13.9.30>

사천시 읍면·동 반장 정수 (제6조 관련)

읍·면·동	정 수
사 천 읍	204
정 동 면	124
사 남 면	113
용 현 면	91
축 동 면	28
곤 양 면	67
곤 명 면	67
서 포 면	66
동 서 동	158
선 구 동	110
동서금동	111
별 용 동	206
향 촌 동	81
남 양 동	85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19)

사천시 규칙 제54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를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관리업무 총괄

제8조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남강댐관련 지역대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0)

사천시 규칙 제543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1)

[별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총 합 계		847	463	17	129	43	22	101	72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737	418	13	91	33	22	94	66	
4급	소계	5	3	1	1					
	행정	3	2	1						
	기술	1			1					
	행정+기술	1	1							
5급	소계	47	22	2	6	3	1	7	6	
	행정	11	7	2					2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3						1	2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시설	9	8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5급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공업+보건+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보건+간호+의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2			2					
6급	소계	205	118	3	29	10	5	28	12	
	행정	54	47	2		2			3	
	세무	1	1							
	사회복지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2	2							
	시설	12	10			2				
	보건진료	10			10					
	행정+세무	12	8					1	3	
	행정+사회복지	14	9					3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7			1		2	4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4			4					
	행정+시설	17	15	1			1			
	행정+해양수산	2	2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6	3			3				
	행정+공업+시설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2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2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8	3					5		
	행정+세무+농업	7					1	5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세무+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4)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농업+시설		6	2					4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7급	소계		222	137	3	36	6	4	23	13	
	행정		47	39	2				6		
	세무		6	6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의료기술		5			5					
	간호		4			4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5)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7급	환경	2	2							
	시설	12	10			1	1			
	수의	1			1					
	보건진료	1			1					
	행정+세무	8	5				1	1	1	
	행정+사회복지	10	8						2	
	행정+전산	7	7							
	행정+농업	8	4		1		1	2		
	행정+공업	1	1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21	19					1	1	
	행정+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공업+시설	1				1				
	사회복지+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4	4							
	행정+공업+환경	7	5			2				
	행정+공업+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6)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7급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수의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5	1				1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전산+공업+방송통신		4	4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약무		8			8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3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8급	소계		187	115	4	17	12	9	16	14	
	행정		61	40	2		1	5	7	6	
	세무		2						1	1	
	사회복지		4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7)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7			7					
	의료기술	5			5					
	간호	3			3					
	환경	4	1			3				
	시설	21	19			2				
	행정+세무	9	7						2	
	행정+사회복지	10	9				1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6	4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0	5			2	1	1	1	
	행정+해양수산	3	3							
	공업+시설	3	2			1				
	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4	1				1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8)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전산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녹지+농업+ 해양수산		1						1		
9급	소계		71	23		2	2	3	20	21	
	행정		21	2				3	8	8	
	사회복지		14						4	10	
	녹지		1	1							
	환경		1	1							
	시설		8	6					2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29)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환경	1				1					
	공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							3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해양수산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사	소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사	소계	1	1								
	기록연구사	1	1								
기능직 합계		75	42	4	6	10		7	6		
기능6급	소계	7	6			1					
	기계	2	2								
	운전	2	2								
	선박항해+선박기관	1	1								
	사무	1	1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0)

직렬별		기관별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기능6급	전기+기계	1				1				
기능7급	소계	13	6		2	1		2	2	
	기계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선박항해+선박기관	2	2							
	사무	4			1			1	2	
	통신+전화상담+전기	1	1							
기능8급	소계	9	8		1					
	운전	5	4		1					
	조무	1	1							
	통신+전화상담+전기	3	3							
기능9급	소계	46	22	4	3	8		5	4	
	기계	4	3			1				
	운전	11	3	2	3	3				
	사무	23	12	2		2		3	4	
	통신+전화상담+전기	2	1			1				
	방호	4	1			1		2		
	위생	2	2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 국	직속 기관	사업 소	읍	면	동	비고
별정6급 상당	소계									
	보건위생감시원									
	비서									
별정7급 상당	소계									
	농기계교육교관									
	보건위생감시원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2)

사천시 규칙 제544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9월 30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별 범위 등) 「사천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 금연구역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
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
3.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4.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거리나 장소 : 금연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3)

제4조(과태료 부과대장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의 과태료 부과 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4)

[별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조 관련)

1.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가. 표지판 내용

- 1) 금연로고 및 금연구역 등 표시
- 2) 금연장소 상징물 표시
- 3) 금연구역 조성 목적 등 안내 문구 표시

(예시) "이 ○○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4) 금연구역 경계 표시
- 5) 사천시 마크 및 지정권자 표시

나. 표지판 표시 방법

- 1) 규격 : 80cm×60cm/ 60cm×40cm/ 30cm×20cm
- 2) 재질 : PVC 5~10mm, UV코팅 유포지 실사 출력
- 3) 해당 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표지판 설치 방법

- 1) 금연구역 표지판은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 가)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 나)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 다)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 2)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 3)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라. 관리기준

표지판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교체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5)

2. 금연구역 표지판 예시

가.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예시)



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표지판(예시)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6)

다. 버스정류소 표지판(예시)

금 연 구 역
NO SMOKING AREA

버스정류소

이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는 금연구역입니다. 이곳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 천 시 장

라. 흡연구역 표지판(예시)

Smoking Area
흡 연 구 역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8)

훈 령

사천시 훈령 제272호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3년 10월 7일

사 천 시 장 정 만 규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동관계법”을 “「노동관계법」”으로, “사천시청(이하 “사용자”라 한다)”을 “시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에 정한 바에 의한다.”를 “을 따른다.”로 한다.

제3조 중 “라 함은 사용자가”를 “란 시청(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로 한다.

제6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사람”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8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39)

제15조 중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를 “에 따라”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16시간” 을 “12시간”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중 “자” 를 “사람” 으로 각각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준다. 휴가 기간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 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의거” 를 “따라” 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0)

제35조(경조휴가)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유급 경조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7조 중 “근로자에게” 를 “근로자에” 로 한다.

제38조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하며,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여하한 채권에” 를 “어떠한 채권에” 로 한다.

제49조 중 “년수” 를 “연수” 로 하며, “의하여” 를 “따라” 로 한다.

제52조 중 “각 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자료” 를 “사람은” 으로, 같은 조 제1호 중 “자로서” 를 “사람으로서” 로,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중 “자” 를 “사람” 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같은 조 제13호 중 “기타” 를 “그 밖의 자료” 로 한다.

제54조 중 “각 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자” 를 “사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 를 “사람” 으로 각각 한다.

제55조 중 “각 호와 같이” 를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8조 중 “의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영아” 를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로 하고, “미만의자와” 를 “미만인 사람과”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규정에 의한” 을 “에 따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1)

제68조 중 “각 호” 를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 를 “사람” 으로 각각 한다.

제69조 중 “별지 1호” 를 “별표 1” 로 한다.

제71조제2항제4호 중 “유고 시” 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8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2조제1호 중 “제반교육” 을 “교육” 으로 하며, “의한” 을 “따른” 으로 한다.

제74조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며,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75조 중 “의한다.” 를 “따른다.” 로 한다.

제5조제5호, 제20조제1항, 제56조제3호, 제57조제1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각각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 제28조, 제51조 중 “기타” 를 “그 밖의” 로 각각 한다.

제17조제1항, 제18조 중 “범위 안에서” 를 “범위에서” 로 각각 한다.

제17조제2항, 제25조 “의하여” 를 “따라” 로 각각 한다.

별표를 별표 1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2)

[별표 1]

징계양정 기준 (제69조 관련)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징계해고	정 직	견 책	
1. 직무태만				
가. 무단결근	계속 15일 이상	계속 7일 이상	계속 3일 이상	
나. 출근시간 지참 및 무단조퇴			계속 또는 월 3회 이상	
다. 정부재산(물품)의 망실, 훼손	비위의 도가 중한 고의	비위의 도가 경한 고의	과실	
라. 근무지 이탈 및 순찰 태만		월 3회 이상	월 2회 이상	
마. 불의의 사태에 대한 대처 소홀	비위의 도가 중한 고의	비위의 도가 경한 고의	고의	
바. 근무지내 불법행위 방치 (미조치)	6건 또는 1,000㎡이상	6건 또는 200㎡이상	6건 또는 30㎡이상	
2. 품위손상				
가. 사기, 절도, 강도, 강간	1회			
나. 도박	2회	1회		
다. 축첩	사실상 동거			
라. 음주 추태	3회	2회	1회	
마. 유흥장 출입(금지구역)	3회	2회	1회	
바. 사회적 비난의 도가 현저한 폭행, 가혹행위	중 고의	경 고의	과실	
사. 단순 형사사건 관련 폭력 등 기타	3회	2회	1회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3)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고
	징계해고	정 직	견 책	
아. 이권 영리행위 및 겸직행위 자. 기밀누설 차. 기타 품위손상 행위	중 고의 1회 중 고의	경 고의 경 고의	과실 과실	
3.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다과불문	2회	1회	
4. 문서에 관한 위법 및 부당행위 가. 공문서 위조, 변조 등 행사 및 파기 나. 허위공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 다. 공정증서 원본의 부실 기재 라. 관인의 부정사용	1회 비위의 도가 중한 고의 1회	1회 비위의 도가 경한 고의	과실	
5. 직권남용 가. 직권의 권한행사로 타인의 권리침해 및 권리행사 방해 나. 직명사칭	비위의 도가 중한 고의 3회	비위의 도가 경한 고의 2회	과실 1회	
6. 행정운영상의 위법 및 부당행위 가. 행정질서의 문란 나. 법령, 훈령, 규칙 위반 다. 직무상 명령위반 라. 정치운동 및 노조활동(집단행위) 마. 친절공정의 의무위반	중 고의 중 고의 중 고의 중고의	경 고의 경 고의 경 고의 경 고의	과실 과실 과실 과실	정상에 따라 징직상용적용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4)

징 계 사 유	징 계 기 준			비 고
	징계해고	정 직	견 책	
7. 음주운전 행위 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최초) 나.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및 무면허운전 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라. 음주운전(면허정지 이상)으로 인한 피해발생 마.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 음주 뺑소니로 피해 발생	 무면허 무면허	 2회 이상 1회 이상 인적·물적	 혼계 최초 1회 인적·물적	음주운전의 개념 -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면허정지)을 의미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5)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35조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1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6)

고 시

사천시 고시 제2013 - 1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3 - 7호
2. 점용·사용 승인년월일 : 2013년 9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어선의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부잔교 설치로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972-95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의 면적 : 885.4㎡(직접 : 885.4㎡, 간접 -㎡)
 - PE부잔교(L=20m, B=4.0m), 도교(L=12m, B=1.0m)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3년 9월 16일 ~ 2028년 9월 15일
7. 점용·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의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7)

승 인 조 건

1. 본 사업은 2013년도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의 일환으로 상기 공유수면에 PE 부잔교를 설치하여 어업인 재산 보호 및 어로활동 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건입니다.
2. 동 시설물 운용 시, 시설물 및 주변해역에 각종 쓰레기(폐기물) 등을 방치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설물 및 주변 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선박의 이·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등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4. 또한, 기 협의조건 중 지속적 이행사항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5.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시설물 운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해역이용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6.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7. 기타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한 후 공사 등 사업 시행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8. 승인조건의 해석 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승인과 관련하여 위법한 사항 및 부정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 취소하고 의법 조치합니다.
9. 위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피승인자는 본 승인증을 수령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동 기간 중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본 승인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8)

사천시 고시 제2013 - 1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변경승인번호 : 제2013-8호
2. 점용·사용 변경승인년월일 : 2013년 9월 1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전력공급용 해저케이블 매설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신수동 60번지선 공유수면
5. 점용·사용승인 면적
 - 47m²
6. 점용·사용 변경(기간 연장) 승인기간
 - 당 초 : 2012년 10월 01일 ~ 2013년 09월 30일
 - 변 경 : 2013년 10월 01일 ~ 2016년 09월 30일
7. 점용·사용 변경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지역경제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8. 점용·사용 변경 승인조건 : 붙임 참조

사 천 시 공 보

제305호(49)

승 인 조 건

1. 기 협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해저케이블의 보수 및 수리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유사 등의 유입으로 연안생태계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2. 공유수면 점·사용기간 완료 후에는 원상복구 의무를 준수하고, 본 사업과 관련된 민원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운영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라 발견 즉시,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문화관광과)에 알려야 합니다.
4. 상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4호에 따라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라야 합니다.
5.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될 경우 피 승인자 부담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
6. 승인목적 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7.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승인조건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8. 상기 승인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승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동 기한 내 이의 신청치 않을 시는 승인조건의 이행을 승낙한 것으로 처리합니다.